

2028학년도 전남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2026. 4.

- 입학처 -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https://admission.jnu.ac.kr>)를 통해 공고합니다.

I

변경사항

1

전형

2027학년도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2

지원자격

□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2027학년도	2028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2027학년도	2028학년도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생활자, 소아암병력자, 대안학교장추천자, 직업군인의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소아암병력자, 대안학교장추천자, 직업군인의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3

석차등급 산출과목 성적 반영 방법

2027 학년도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0
2028 학년도	석차등급	1	2	3	4	5				
	등급점수	100	90	80	70	0				

4

학생부교과전형 반영 교과(군)

2027 학년도	구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전 모집단위 (예체능 계열 제외)	○	○	○	○	○	○	○*
	예능 계열	○	○	-	○	○	-	-
	체육교육과	○	○	○	○	-	-	-
*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은 인문대학 모집단위만 반영								
2028 학년도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전 모집단위 (예능 계열 제외)	○	○	○	○	○	○*	
	예능 계열	○	○	-	○	-	-	
*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은 인문대학 모집단위만 반영								

5

학생부교과전형 5등급 이외 성적 반영

- 5등급 반영: 기존 9등급 체계의 성적은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된 Z점수를 산출기준에 맞춰 5등급으로 환산 반영
 - 검정고시 성적 반영 방법: 일부 구간 감점 조정
-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6

학생부교과전형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

2027 학년도	진로선택과목만 반영						
2028 학년도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반영						
	상위 3개 과목 성취도	5단계	A	B	C	D	E
		3단계	A	-	B	-	C
	등급점수		5	4	3	2	1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7 학교폭력 감점 기준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8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응시지정영역 폐지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탐구 2개 과목 중 높은 1개 과목 반영(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개 과목 평균)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기준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경영대학을 제외한 모집단위의 수능최저학력기준 7등급 이내로 통합 유형화(수산생명의학과는 수능최저학력기준 8등급 이내 유지)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9 정시 전형 요소별 반영 점수

- 수능 영역별 점수 반영 방법을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표준점수로 통일(전 모집단위)
-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조정
- 수능 영어 등급 간 반영 점수 조정(10점 → 5점)
- 수능 탐구 영역 1개 반영에 따른 탐구 영역 반영 비율 축소[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 평균 반영]

※ 자세한 사항은 본문 참조

10 의과대학 지역의사전형

구분	결정 사항
○ 권역선발과 광역선발의 모집 시기 배정	○ 권역선발은 수시, 광역선발은 정시 선발
○ 수시모집 전형 간 중복 지원 허용 여부	○ 수시모집 전형 간 중복 지원 불허
○ 전형 방법	○ 권역 선발(수시):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 광역 선발(정시): 수능위주전형 : 자연계열 선발방법에 따름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학과 탐구 2개 과목 평균 포함 3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모집 구분	전형유형 및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최저 학력기준	
			정원내	정원외			합계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일반)	1,274		1,274	[일괄선발] 학생부 100%	일부 적용 ¹⁾
		학생부교과(지역인재)	846		846		
		학생부교과(지역균형)	9		9		일부 적용 ²⁾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94		94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52		52		미적용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46	46		일부 적용 ²⁾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21	21		
		학생부교과(만학도)		5	5		미적용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10	10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35		35	· 1단계: 학생부 100% ※ 음악교육과 5배수, 체육교육과 3배수 · 2단계: 1단계 80% + 실기 20% · 1단계: 학생부 100% (5배수) · 2단계: 1단계 80% + 면접 20%	일부 적용 ³⁾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31	31		미적용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90	90	[일괄선발] 학생부 60% + 면접 40%	
	학생부교과전형 소계		2,310	203	2,513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Ⅰ)	1,037		1,037	·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 의학계열 6배수 ·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일부 적용 ²⁾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⁴⁾	26		26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5		5	[일괄선발] 서류평가 100%	미적용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Ⅱ)	172		172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178	178		일부 적용 ²⁾
	학생부종합전형 소계		1,240	178	1,418		
	실기 /실적	실기/실적(예능실기)	150		150	[단계선발]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 1단계: 학생부 100% (5배수) · 2단계: 1단계 30% + 실기 70% [일괄선발] 국악학과, 음악학과 · 학생부 30% + 실기 70%	미적용
	실기위주전형 소계		150		150		
	수시전형 소계		3,700	381	4,081		
정시 모집	수능	수능(일반) ⁵⁾	745		745	[일괄선발] 수능 100%	미적용
		수능(지역인재)	37		37		
		수능(지역의사-광역)	12		12		
	실기 /실적	실기/실적(예능실기)	9		9	[일괄선발] 수능 30% + 실기 70%	미적용
	정시전형 소계		803		803		
학부 계		4,503	381	4,884			

1) 여수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수산생명의학과 제외)

2) 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학과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의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포함 3개 영역의 합. 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수학 포함 3개 영역의 합, 탐구 2개 과목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3)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전형은 2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 적용

4)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전형은 총 26명[목포권(7명), 여수권(2명), 순천권(9명), 나주권(3명), 해남권(3명), 영광권(2명)]을 선발하며, 수학과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의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포함 3개 영역의 합 6등급 이내 적용

5)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수시모집 미충원 발생 시 정시모집)는 수능 80% + 실기 20%로 선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시행하지 않음. 순수외국인전형은 국제협력과에서 별도 시행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28쪽 참고)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선발인원(35명) 포함

1

전형유형별 지원 자격

가.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일반)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인재)	-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 - 단,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지원자는 아래의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학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1학년도 이전 중학교 입학자는 고등학교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 - 단,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지원자는 아래의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학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1학년도 이전 중학교 입학자는 고등학교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head> <tbody>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td>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사회배려대 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며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r> <td>국가보훈대상자</td><td>•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td></tr>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td>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td></tr> <tr> <td>자립지원 대상자</td><td>•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td></tr> </table>	구분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자립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학생부교과 (사회다양성)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지원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r> <td>다문화가정</td><td>•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td></tr> <tr> <td>다자녀가구</td><td>• 부모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td></tr> <tr> <td>소아암 병력자</td><td>• 소아암 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td></tr> <tr> <td>대안학교장추천자</td><td>•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td></tr> <tr> <td>직업군인의 자녀</td><td>•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td></tr> <tr> <td>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td><td>•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td></tr> </table>	구분	지원자격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자녀가구	• 부모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소아암 병력자	• 소아암 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대안학교장추천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업군인의 자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자녀가구	• 부모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가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소아암 병력자	• 소아암 병력자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대안학교장추천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업군인의 자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 중인 자의 자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나' 목에 해당하는 사람(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 2) 대학이 모집단위별로 제시한 동일 계열 교과(군)의 교과를 24학점(202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30단위) 이상 이수해야 함. 다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시한 학과별 교과(군)이 대학이 제시하는 모집단위별 교과(군)과 다르더라도, 학생이 대학의 모집단위별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 교과를 24학점(2027년 2월 이전 졸업자는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 ※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전형명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기초/차상위 /한부모)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r> <td>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td>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td></tr> </table>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구분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학생부교과 (예체능실기)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교과 (만학도)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연령이 30세 이상(2028. 3. 1. 기준)인 자										
학생부교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군 의무 복무 경력 포함)인 재직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8. 3. 1.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 후 재학기간에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음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r> <td>일반고등학교</td><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td></tr> <tr> <td>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td><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td></tr> <tr> <td>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td><td>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td></tr> <tr> <td>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td><td>•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td></tr> </table>	구분	지원자격	일반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구분	지원자격										
일반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자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이수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학생부교과 (특수교육 대상자)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r> <td>장애인 등록자</td><td>•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td></tr> <tr> <td>상이등급자</td><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td></tr> </table>	구분	지원자격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구분	지원자격										
장애인 등록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상이등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상응하는 자										
학생부교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나.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학생부종합 (고교생활우수자Ⅰ, Ⅱ)	-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성적산출이 가능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종합 (지역의사-권역)	-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성적산출이 가능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 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중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진료권별 소재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재학기간(입학~졸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므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학생부종합 (후계농업경영인)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head> <tbody> <tr> <td>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td><td>•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td></tr> <tr> <td>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td><td>•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구분	지원자격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그 자녀	•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	-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자격</th></tr> </thead> <tbody> <tr> <td>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td><td>•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중·고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td></tr> <tr> <td>6년 과정 (중·고 전 과정)</td><td>•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td></tr> </tbody> </table>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 재학 및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모집단위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함	구분	지원자격	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중·고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6년 과정 (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구분	지원자격						
12년 과정 (초·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이 초·중·고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6년 과정 (중·고 전 과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다. 실기/실적위주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실기/실적 (예능실기)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단, 국외고 졸업자는 국내 고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취득한 성적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가. 학생부교과전형

1)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학생부 [점수]	면접 [점수]	실기 [점수]	합계 [전형총점]	
- 학생부교과(일반)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일괄	1배수	100% (100%) [1,000점]	—		100% (100%) [1,000점]	일부 적용 ¹⁾
- 학생부교과(지역균형) -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 학생부교과(만학도)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일괄	1배수	100% (100%) [1,000점]	—		100% (100%) [1,000점]	일부 적용 ²⁾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1단계	일정 배수 ³⁾	100% (100%) [800점]	—		100% (100%) [800점]	일부 적용 ⁴⁾
	2단계	1배수	80% (66.7%) [800점]		20% (33.3%) [200점]	100% (100%) [1,000점]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1단계	5배수	100% (100%) [800점]	—		100% (100%) [800점]	미적용
	2단계	1배수	80% (66.7%) [800점]	20% (33.3%) [200점]		100% (100%) [1,000점]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일괄	1배수	60% (60.0%) [600점]	40% (40.0%) [400점]		100% (100%) [1,000점]	미적용

1) 여수캠퍼스는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수산생명의학과 제외)

2) 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학, 탐구 2개 과목의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포함 3개 영역의 합. 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수학 포함 3개 영역의 합,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3)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5배수, 체육교육과는 3배수

4)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2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 적용

※ ()안은 실질 반영 비율임

2) 학생부교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명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 학생부교과(일반)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 학생부교과(지역균형) •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 학생부교과(만학도)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학생부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660	225	1,000	100%	1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0	15			
		출결	90	10			
	합계		750	250	1,000	100%	100%
•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학생부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528	180	800	80%	66.7%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0	12			
		출결	72	8			
	실기		100	100	200	20%	33.3%
	합계		700	300	1,000	100%	100%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528	180	800	80%	66.7%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0	12			
		출결	72	8			
	면접		100	100	200	20%	33.3%
	합계		700	300	1,000	100%	100%
•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학생부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396	135	600	60%	6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0	9			
		출결	54	6			
	면접		300	100	400	40%	40.0%
	합계		750	250	1,000	100%	100%

3)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

가)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내신 5등급 체계 적용 대상자

(가) 성적 반영 교과(군) 및 과목

- 성적 반영 기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졸업자도 동일함)
- 반영 교과(군)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한문
전 모집단위 (예능 계열 제외)	○	○	○	○	○	○ ¹⁾
예능 계열	○	○	-	○	-	-

1) 제2외국어/한문 교과군은 인문대학 모집단위만 반영

- 반영 교과(군)의 이수 학점 및 과목 수

구분	석차등급 산출과목
반영 이수 학점 및 반영 과목 수	반영 교과(군) 이수 학점 전체

(나) 성적 반영 기준

- 석차등급 산출 과목

구분	반영방법	비고
석차등급이 있는 경우	• 이수학점 및 학기별 과목 석차등급 반영, 학기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는 학년 석차등급을 학기별 석차등급으로 간주하여 반영	•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전 과목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 전 과목에서 석차등급이 없고, 표준편차가 표기된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과목 석차등급으로 변환	• 전 과목 등급 미산출로 교과전형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만 적용

- 성취도 반영 과목(진로/융합선택과목)

구분	반영방법	비고
3과목 이상 이수자	• 성취도별 등급점수로 환산하여 성적 반영	• 성취도 반영 과목 3과목 미만 이수자는 비교내신을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함

※ 이 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관련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다) 성적 반영 방법

- 석차등급 산출 과목: 과목 석차등급별 등급점수에 이수학점을 곱하여 반영

석차등급	1	2	3	4	5
등급점수	100	90	80	70	0

- 성취도 반영 과목(진로/융합선택과목)

성취도	5단계	A	B	C	D	E
	3단계	A	-	B	-	C
등급점수		5	4	3	2	1

-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전형구분	반영항목	산출식	산출점수	합계
일괄선발 전형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기본점수 660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 학점})}{\text{반영과목 이수학점(단위)의 합}} \times 2.25$	885	1,0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교과 성취도 상위 3과목 등급점수의 합	15	
	출결	$90 + (1 - \frac{\text{결석 일수}}{21}) \times 10$	100	
학생부교 과 (예 체 능, 특수 교육대상 자)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기본점수 528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 학점})}{\text{반영과목 이수학점(단위)의 합}} \times 1.80$	708	8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교과 성취도 상위 3과목 등급점수의 합 * 0.8	12	
	출결	$72 + (1 - \frac{\text{결석 일수}}{21}) \times 8$	80	
학생부교 과 (조 기 취업형제 약학과)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기본점수 396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 학점})}{\text{반영과목 이수학점(단위)의 합}} \times 1.35$	531	6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교과 성취도 상위 3과목 등급점수의 합 * 0.6	9	
	출결	$54 + (1 - \frac{\text{결석 일수}}{21}) \times 6$	60	

※ 출결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단,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 질병·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미인정(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 결석일수 21일 이상은 기본점수만 반영

(2) 1~ 5등급 이외의 성적 체계를 사용하는 국내고 졸업(예정)자

(가) 성적 반영 교과(군) 및 과목: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나) 성적 반영 기준: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다) 성적 반영 방법: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o 성적 산출 방법

① 석차 9등급제를 변환하는 경우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과목별 Z점수 산출

$$Z\text{점수} = \frac{\text{원점수} - \text{과목평균}}{\text{표준편차}}$$

• 산출된 Z점수를 아래의 1~5등급 산출기준에 맞춰 과목별 등급 부여함

Z점수	1.2816 이상	1.2816 미만~ 0.4125 이상	0.4125 미만~ -0.4125 이상	-0.4125 미만~ -1.2816 이상	-1.2816 미만
석차	0~10% 이내	10% 초과~ 34% 이내	34% 초과~ 66% 이내	66% 초과~ 90% 이내	90% 초과~ 100%
등급	1	2	3	4	5
반영점수	100	90	80	70	0

② 취득한 등급 및 점수를 변환하는 경우

등급 /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97.0 이상	96.9~ 90.0	89.9~ 87.0	86.9~ 80.0	79.9~ 77.0	76.9~ 70.0	69.9~ 67.0	66.9~ 60.0	60 미만
		E		M		A			N
		7		6, 5		4		3, 2	1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0	0		

-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 취득성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이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관련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3) 국외고 졸업(예정)자

(가) 성적 반영 기준

-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단,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학점(단위) 수가 없는 경우는 1단위로 산정
- 학기와 연 학점(단위) 점수가 함께 표시된 경우 연 학점(단위) 점수를 적용
- 정규학기(1학기, 2학기)만 반영(계절학기 등은 반영하지 않음)

(나) 성적 반영 방법:

- 등급 산출이 가능한 모든 과목을 반영
- 성적이 없는 과목 및 시험 점수는 제외
- 성적산출방법

취득성적 (등급/ 점수)	A+	A, A-	B+	B, B-	C+	C, C-	D+	D, D-	E, F
	97.0 이상	96.9~ 90.0	89.9~ 87.0	86.9~ 80.0	79.9~ 77.0	76.9~ 70.0	69.9~ 67.0	66.9~ 60.0	60 미만
		E		M		A			N
		7		6, 5		4		3, 2	1
반영점수	100	95	90	85	80	70	0		

-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 취득성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이외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관련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4) 검정고시 출신자

(가) 성적 반영 기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전 과목 반영

(나) 성적 반영 방법

- 취득성적 환산: 국어, 영어, 수학은 3단위, 나머지 과목은 1단위로 산출
- 상대평가 등급(5등급) 산출 방법

취득점수	100	99~95	94~90	89~85	84~80	79~70	69~60	59 이하
환산점수	85	83	80	75	70	62	52	0

- 성취도 항목 산출 방법: 비교내신 적용
- 성취도 산출 방법: 비교내신 적용

(다) 학생부 반영 점수별 성적 산출식: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

4)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반영 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전형자료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 면접 ▶ 평가요소: 진로·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100/200
•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300/400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실시함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전남대학교 면접 세부지침에 의거 실시

5) 학생부교과전형 실기 반영 방법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점수 (기본점/만점)
이과 과학 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100/200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작곡	(1)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고 분석하기(형식과 화성 분석)	
	관현악 현악/관악	(1) 자유곡 1곡	
체육교육과		(1) 100m 달리기 (2) 지그재그런 (3) 체조 (4) 축구	

나. 학생부종합전형

1)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서류평가 (%)	면접평가 (%)	합계 (%)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1단계	3배수 ¹⁾	700 (100%)	—	700 (100%)	일부 적용 ²⁾
	2단계	1배수	700 (70%)	300 (30%)	1,000 (100%)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II)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일괄	1배수	1,000 (100%)	—	—	미적용
						일부 적용 ²⁾

1)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단계 6배수를 선발

2)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

※ ()안은 실질반영 비율

2)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전형명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서류평가	350	350	700	70%	70%
	면접평가	150	150	300	30%	30%
	합계	500	500	1,000	100%	100%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II)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서류평가	500	500	1,000	100%	100%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법

전형명	평가 방법	전형자료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 서류평가 - 평가요소: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350/700
	- 면접평가 - 평가요소: 진로·학업역량, 공동체역량		150/300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II)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 서류평가 - 평가요소: 진로역량, 학업역량, 공동체역량	학교생활기록부	500/1,000

※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전남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세부 지침에 따름

다. 실기/실적위주전형

1) 실기/실적위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비율			
				학생부 (%)	면접 (%)	실기 (%)	합계 (%)
• 실기/실적 (예능실기)	음악학과, 국악학과	일괄선발		300 (18.5%)	—	700 (81.5%)	1,000 (100%)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1단계	5배수	300 (100%)	—	—	300 (100%)
		2단계	1배수	300 (18.5%)	—	700 (81.5%)	1,000 (100%)

※ ()안은 실질반영 비율

2) 실기/실적위주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모집단위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비율	
			기본점수	실질점수	배점	명목비율	실질비율
• 예술대학	학생부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198	67.5	300	30%	17.6%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0	4.5			
		출결	27	3			
	실기		350	350	700	70%	82.4%
	합계		575	425	1,000	100%	100%

3) 실기/실적위주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반영 방법 중 내신 5등급 체계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11면 참고)

4) 실기/실적위주전형 학생부 반영 점수 성적 산출식

모집단위	전형요소	산출식	산출점수	합계
• 예술대학	반영교과군 석차등급산출과목	$\text{기본점수 } 198 + \frac{\sum(\text{반영과목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학점(단위)})}{\text{반영과목 이수학점(단위)의 합}} \times 0.675$	265.5	300
	반영교과군 진로/융합선택과목	반영교과 성취도 상위 3과목 등급점수의 합 * 3/10	4.5	
	출결	$27 + (1 - \frac{\text{결석 일수}}{21}) \times 3$	30	

※ 질병·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미인정(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 결석일수 21일 이상은 기본점수만 반영

※ 검정고시 출신자의 출결 성적은 비교 내신을 적용하여 반영

5) 실기/실적위주전형 실기 반영 방법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점수 (기본점/만점)
음악학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350/700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작곡	(1)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고 분석하기(형식과 화성 분석)	
		(2) 피아노(혹은 서양악기 중 자유악기) 실기 자유곡 1곡	
	관현악	(1) 자유곡 1곡	
국악학과	국악성악	판소리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350/700
		가곡 (1) 평시조 중 1곡 / (2) 남창가곡, 여창가곡 중 1곡	
		가야금 병창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국악기악	현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관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타악 (1) 풍물가락 / (2) 판소리 장단 / (3) 산조 장단	
	국악작곡이론	국악작곡 (1) 전조를 포함한 화성풀이 및 분석 또는 주어진 주제에 의한 36마디 이상의 국악기 독주곡 작곡 중 택 1	
		국악이론 (1) 국악기초이론	
미술학과	한국화	(1) 정물수묵담채	
	서양화	(1) 인물수채화	
	조소	(1) 인체두상소조	
	공예	(1) 기초디자인	
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의 해석과 표현)	

라. 학교폭력조치사항 성적 반영

1) 반영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포함)

2) 전형별 반영방법

전형 유형	반영 방법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일괄감점
학생부종합	정성평가

3) 감점 기준: 전형별 아래의 점수를 감점함

전형	선발 방식	실질 반영 총점	조치 호수 및 감점 기준		
			1~3호	4~5호	6 ~ 9호
			-10%	-50%	-100%
학생부교과(일반)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지역균형)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학생부교과(만학도)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일괄 선발	250	-25	-125	-250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Ⅱ)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500	-50	-250	-500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250	-25	-125	-250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200	-20	-100	-200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단계 선발	200	-20	-100	-200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Ⅰ)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350	-35	-175	-350
실기/실적(예능실기)	단계/일괄	75	-7.5	-37.5	-75

※ 단계선발 전형인 경우 1단계에서만 적용

※ 동일인의 다회 조치 발생 시 누적 적용하되 전형별 감점 최고점인 실질반영 총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

※ 동일 사안의 다수 조치 발생 시 조치 호수 중 가장 높은 호수 반영

모집단위	반영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영역 중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일반	지역인재	지역균형, 사회배려대상자 기초/차상위/한부모	고교생활 우수자 I	지역의사 (권역), 농어촌학생
• 의과대학 ¹⁾	3개 영역 합	-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¹⁾		5등급 이내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6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²⁾		6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 간호대학, 경영대학	2개 영역 합	9등급 이내	10등급 이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³⁾ ,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예술대학(미술학과 이론전공),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AI융합대학, 자율전공학부(전체)		7등급 이내	8등급 이내			
• 수산해양대학(수산생명의학과)		8등급 이내	9등급 이내			
• 공학대학, 문화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수산해양대학(수산생명의학 과 제외), 예술대학(미술학과 이론전공 제외), 창의융합학부	미적용					

1)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수학과 탐구 2개 과목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포함 3개 영역의 합

2) 수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은 수학 포함 3개 영역의 합, 탐구는 2개 과목 평균(소수점 이하 절사하지 않음)

3)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전형은 2개 영역의 합 7등급 이내 적용

※ 전공예약 모집단위는 해당 학부(과) 기준과 동일

※ 지원자가 취득한 높은 등급을 반영하며, 한국사는 반영 영역에 포함하지 않음

1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 수능(일반) • 실기/실적(예능실기)	- 우리 대학 모집단위에서 정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2028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수능(지역인재)	- 우리 대학 모집단위에서 정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사 포함) 반영 영역에 응시한 자로서,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2028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 - 단,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 지원자는 아래의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학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소재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 2021학년도 이전 중학교 입학자는 고등학교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 수능(지역의사·광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중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일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고등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 ※ 재학기간(입학~졸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외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 형 명	모 집 단 위	반영비율	
				수능	실기
가/나/다군	수능 위주	수능(일반)	실기를 실시하는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100%	-
가/나군	수능 위주	수능(지역인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약학대학 약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100%	-
가군	수능 위주	수능(지역의사-광역)	의과대학 의학과	100%	
나군	수능 위주	수능(일반)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¹⁾)	80%	20%
	실기/실적 위주	실기/실적(예능실기)	예술대학 ¹⁾	30%	70%

1)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예술대학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나.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

계열	대학(모집단위)	표준점수			등급점수	
		국어	수학	탐구 ¹⁾ (1과목)	영어	한국사
전체 계열 (예능 계열 제외)	• 전체 모집단위	반영			등급별 등급점수 반영	
예능 계열	• 음악교육과, 미술학과, 국악학과,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반영	미반영	반영		

1)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의 평균 반영

다.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계열		수능					실기	전형 총점
		반영점수(반영비율)			등급점수 (반영비율)	계		
		국어	수학	탐구 ¹⁾ (1개 과목)	영어			
수 능 위 주	인문, 인문·자연,	400점 (40%)	300점 (30%)	100점 (10%)	200점 (20%)	1,000점 (100%)	—	1,000점
	자연	300점 (30%)	400점 (40%)	100점 (10%)	200점 (20%)	1,000점 (100%)	—	1,000점
예 체 능 ²⁾	미술학과(이론전공)	500점 (50%)		200점 (20%)	300점 (30%)	1,000점 (100%)	—	1,000점
	음악교육과	400점 (50%)		160점 (20%)	240점 (30%)	800점 (100%)	200점	1,000점
	체육교육과	320점 (40%)	240점 (30%)	80점 (10%)	160점 (20%)			
	미술학과(이론전공제외) 국악학과, 음악학과, 디자인학과	150점 (50%)		60점 (20%)	90점 (30%)	300점 (100%)	700점	1,000점

1) 탐구 과목(사탐, 과탐, 직탐) 중 높은 점수 1개를 반영.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 평균 반영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와 예술대학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표준점수를,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점수를 반영

※ 실기 세부 평가과제는 202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안내

※ 수능 가산점(한국사) 적용으로 1,000점을 초과할 수 있음

<영역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

- 국어, 수학: 수능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반영함
- 탐구: 지원자가 응시한 탐구 과목(사탐, 과탐, 직탐) 중 높은 표준점수 1개를 활용하여 반영
※ 단,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탐구 2개 과목(사탐/과탐)의 평균 반영
- 영어: 수능 등급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이 정한 등급별 등급점수를 반영(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구분		1	2	3	4	5	6	7	8	9
수능 위주	인문, 인문·자연, 자연	200	195	190	185	180	165	150	130	0
예 체 능	미술학과(이론전공)	300	292.5	285	277.5	270	247.5	225	195	0
	음악교육과	240	234	228	222	216	198	180	156	0
	체육교육과	160	156	152	148	144	132	120	104	0
	미술학과(이론전공제외) 국악/음악/디자인학과	90	87.75	85.5	83.25	81	74.25	67.5	58.5	0

-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등급을 활용하며, 우리 대학이 정한 등급별 등급점수를 전형총점에 가산하여 반영

수능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점수	10					9	8	7	0

라. 실기 반영 방법

1) 사범대학(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점수 (기본점/만점)
예 문 과 학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0/200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체육교육과		(1) 100m 달리기 (2) 지그재그런 (3) 체조 (4) 축구	

※ 체육교육과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2) 예술대학(음악학과, 국악학과,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모집단위		실기 과제	반영 점수 (기본점/만점)
음악학과	피아노	(1) F.Chopin Etude Op.10 또는 Op.25 중 1곡	
		(2) L.V.Beethoven Piano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성악	(1) 이탈리아 가곡 또는 오페라 아리아 중 1곡	
		(2) 독일 가곡 중 1곡	
	작곡	(1) 주어진 동기에 의한 세도막 형식의 피아노곡을 작곡하고 분석하기(형식과 화성 분석)	
		(2) 피아노(혹은 서양악기 중 자유악기) 실기 자유곡 1곡	
	관현악	(1) 자유곡 1곡	
국악학과	국악 성악	판소리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0/700
		가곡 (1) 평시조 중 1곡 / (2) 남창가곡, 여창가곡 중 1곡	
		가야금 병창 (1) 단가 중 1곡 / (2) 판소리 중 1곡	
	국악 기악	현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관악 (1) 정악곡 중 1곡 / (2) 산조	
		타악 (1) 풍물가락 / (2) 판소리 장단 / (3) 산조 장단	
	국악 작곡 이론	국악작곡 (1) 전조를 포함한 화성풀이 및 분석 또는 주어진 주제에 의한 36마디 이상의 국악기 독주곡 작곡 중 택 1	
		국악이론 (1) 국악기초이론	
미술학과	한국화	(1) 정물수묵담채	
	서양화	(1) 인물수채화	
	조소	(1) 인체두상소조	
	공예	(1) 기초디자인	
디자인학과		(1) 기초디자인(기초 조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의 해석과 표현)	

※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이외 모집단위는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마. 학교폭력조치사항 성적 반영 방법

1) 반영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검정고시 포함)

2) 전형별 반영방법

전형 유형	반영 방법
정시 전형 전체	일괄감점

3) 감점 기준: 전형별 실질반영점수 중 아래의 점수를 감점함

전형	선발 방식	실질 반영 총점	조치 호수 및 감점 기준		
			1~3호	4~5호	6 ~ 9호
			-10%	-50%	-100%
수능(일반):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제외 수능(농어촌학생)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 수능(지역인재) 수능(지역의사) 수능(지역균형) 수능(기초/자상위/한부모)	일괄 선발	1,000	-100	-500	-1,000
수능(일반)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		800	-80	-400	-800
실기/실적(예능실기)		300	-30	-150	-300
학생부교과(만학도)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250	-25	-125	-250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250	-25	-125	-250

※ 동일인의 다회 조치 발생 시 누적 적용하되 전형별 감점 최고점인 실질반영 총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

※ 동일 사안의 다수 조치 발생 시 조치 호수 중 가장 높은 호수 반영

바. 군별 모집단위 선발현황

단과대학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간호대학	간호학과(지역인재 포함)	-	-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제학부	-
공과대학	건축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전기공학과, 생물공학과	토목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부, 산업공학과	-
공학대학 ◆	-	-	건축디자인학과, 의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임산공학과, 농생명화학, 식품공학과, 분자생명공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농업경제학과,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응용식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동물자원학부,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음악교육과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인류고고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지리학과	-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과학부	-
수산해양대학 ◆	수산생명의학과		해양수산광역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
약학대학	-	약학부(지역인재 포함)	-
예술대학	-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의과대학	의학과[지역인재, 지역 의사(광역) 포함]	-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독일언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수학과, 물리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생물학과	-
AI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빅데이터융합학과	-
본부직할	자율전공학부(1년), 자율전공학부(4년)	-	-
학무본부직할 ◆		창의융합학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지역인재 포함)	-	-

◆ 표기된 단과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소재

사.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모집 이월선발 계획

1) 전형별 반영 방법

구분	이월 전형	전형 방법	비고
• 학생부교과(일반)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¹⁾ • 학생부교과(사회배려대상자) • 학생부교과(사회다양성)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Ⅰ) •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Ⅱ) • 학생부종합(후계농업경영인)	• 수능(일반)	【일괄선발】수능 100%	모집단위 해당군으로 이월 선발
• 학생부교과(예체능실기)		【일괄선발】수능 80%+실기 20%	
• 학생부종합(지역의사-권역)	• 수능(지역의사-권역)	【일괄선발】수능 100%	
• 학생부교과(지역균형)	• 수능(지역균형)		
• 학생부교과(기초/차상위/한부모)	• 수능(기초/차상위/한부모)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	•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 수능(농어촌학생)		
• 실기/실적(예능실기)	• 실기/실적(예능실기)	【일괄선발】수능 30% + 실기 70% ※ 예술대학	정시 나군으로 이월 선발
• 학생부교과(만학도)	• 학생부교과(만학도)	【일괄선발】학생부 100% ※ 산업기술융합공학과(야간)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직자)		
•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 학생부교과(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일괄선발】 학생부 60% + 면접 40%	

1) 정시에서 수능(지역인재)을 실시하는 모집단위는 해당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

※ 전공예약 학과(전공) 결원 발생 시 해당 학부의 정시모집 수능(일반) 선발인원으로 이월

2) 군별 모집단위 이월 선발현황

단과대학	정시 가군	정시 나군	정시 다군
공학대학 ◆		산업기술융합공학과(야간), 스마트응용설계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디지털융합정보학과	공학계열, 석유화학소재공학과
문화사회과학대학 ◆		문화관광경영학과	국제학부(영어학전공), 국제학부(일본학전공), 국제학부(중국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물류교통학과, 문화콘텐츠학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산해양대학 ◆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기관시스템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예술대학		음악학과(성악전공, 작곡전공, 관현악전공), 국악학과(국악성악전공, 국악작곡이론전공, 국악기악전공), 미술학과(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공예전공, 이론전공), 디자인학과	

◆ 표기된 단과대학은 여수캠퍼스에 소재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모집

2028학년도 순수외국인전형 시행계획

1. 선발 모집단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구분	대학	모집단위	2028학년도	
			3월 입학(전기)	9월 입학(후기)
광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	
	경영대학	경영학부	✓	✓
		경제학부	✓	✓
	공과대학	건축학부	✓	✓
		토목공학과	✓	✓
		환경에너지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	
		기계공학부	✓	
		신소재공학부	✓	✓
		전자컴퓨터공학부	✓	
		화학공학부	✓	✓
		고분자융합소재공학부	✓	✓
		산업공학과	✓	
		전기공학과	✓	
		생물공학과	✓	✓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식물학과	✓	✓
		원예생명공학과	✓	✓
		응용생물학과	✓	✓
		산림자원학과	✓	✓
		임산공학과	✓	✓
		조경학과	✓	✓
		농생명화학학과	✓	✓
		식품공학과	✓	✓
		분자생명공학과	✓	✓
		동물자원학부	✓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농업경제학과	✓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	✓
	사회대학	정치외교학과	✓	✓
		사회학과	✓	✓
		심리학과	✓	✓
		문헌정보학과	✓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
		지리학과	✓	✓
		문화인류고고학과	✓	✓
		행정학과	✓	✓
	생활대학	생활복지학과	✓	✓
		식품영양과학부	✓	✓
		의류학과	✓	✓
광주	예술대학	음악학과(피아노전공)	✓	✓
		음악학과(성악전공)	✓	✓
		음악학과(작곡전공)	✓	✓
		음악학과(관현악전공)	✓	✓
		국악학과	✓	✓

구분	대학	모집단위	2028학년도	
			3월 입학(전기)	9월 입학(후기)
		미술학과(한국화전공)	✓	✓
		미술학과(서양화전공)	✓	✓
		미술학과(조소전공)	✓	✓
		미술학과(공예전공)	✓	✓
		미술학과(이론전공)	✓	✓
		디자인학과	✓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
		영어영문학과	✓	✓
		독일언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	✓
		중어중문학과	✓	✓
		일어일문학과	✓	✓
		사학과	✓	✓
		철학과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	✓
		통계학과	✓	✓
		물리학과	✓	✓
		지구환경과학부	✓	✓
		생물학과	✓	✓
		화학과	✓	✓
		생명과학기술학부	✓	✓
	AI융합대학	인공지능학부	✓	
		미래모빌리티학과	✓	✓
		빅데이터융합학과	✓	✓
	직할학부	자율전공학부		
광주캠퍼스계			66	59
여수	공학대학	공학계열	✓	✓
		건축디자인학과	✓	✓
		의공학부	✓	✓
		석유화학소재공학과	✓	✓
		스마트기계융합공학과		✓
	문화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영어학전공)	✓	✓
		국제학부(일본학전공)	✓	✓
		국제학부(중국학전공)	✓	✓
		글로벌비즈니스학부	✓	✓
		물류교통학과	✓	✓
		문화콘텐츠학부	✓	✓
		문화관광경영학과	✓	✓
	수산해양대학	해양수산광역	✓	✓
		기관시스템공학과	✓	✓
		조선해양공학과	✓	✓
		수산생명의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	✓	✓
	직할학부	창의융합학부		
여수캠퍼스계			26	27

2. 전형 일정

: 국제협력과 홈페이지(<https://international.jnu.ac.kr/>)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3. 전형 방법

평가 방법	전형 요소	반영비율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
일괄 합산	수학할 수 있는 언어능력	50%	정성평가
	수학할 수 있는 전공능력	50%	

4. 지원 자격

가. 광주 캠퍼스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이 정한 어학능력시험 충족자	3급 이상 또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단계 이상 이수자	-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59(My Best Scores 성적 인정, 4개 영역의 응시 일자가 모두 2025. 4. 1. 이후인 성적만 인정 / ibt Home Edition 성적 인정 / ITP 성적 불인정),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TOEIC 700 이상 취득 - 한국어능력과 영어능력 중 한 가지 언어능력 충족 시 지원자격 인정

나. 여수 캠퍼스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비고
국내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이 정한 어학능력시험 충족자	3급 이상 또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3단계 이상 이수자 ※ 문화관광경영학과: 2급 이상 또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정규강좌 2단계 이상 이수자	- 영어능력시험 TOEFL iBT 59(My Best Scores 성적 인정, 4개 영역의 응시 일자가 모두 2025. 4. 1. 이후인 성적만 인정 / ibt Home Edition 성적 인정 / ITP 성적 불인정),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 TOEIC 700 이상 취득 - 한국어능력과 영어능력 중 한 가지 언어능력 충족 시 지원자격 인정

※ 상세 지원자격은 국제협력과 홈페이지(<https://international.jnu.ac.kr/>)에서 추후 별도 공고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기 바람

5. 제출 서류(공통)

선택구비서류	기타 구비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한국의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재정입증서류	입학지원서 여권사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개인신상기록서 학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전남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s://admission.jnu.ac.kr>)를 통해 공고합니다.